



사회보장국에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합니다. 그들의 고용주는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을 공제하고 분담금을 맞추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그 세금을 납부한 다음 사회보장국에 임금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직접 IRS에 자신의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점이나 업체 또는 전문직을 자기 스스로 혹은 파트너로서 운영하시는 분을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사회보장에 대한 수입을 신고합니다. 순 수입이 1년 동안 \$400 달러 이상이라면 제출해야 할 여타의 세무 서식들 외에 Schedule SE 서식에 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보험료 납부

2008년의 사회보장 세율은 자영업 수입의 15.3 퍼센트이며, 수입액이 \$102,000 까지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102,000 달러가 넘는 수입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세금의 2.9 퍼센트인 메디케어 몫만 지불하면 됩니다.

세금을 공제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영업 순수입은 전체 사회보장 세금의 절반 금액만큼 감해줍니다. 이것은 고용주의 사회보장 세금 분담금이 고용인의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용인들이 세금 법에 따라 대우 받는 식과 같습니다.

둘째, IRS Form 1040 상에서 사회보장 세금의 절반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제는 수정 총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 소득에서 취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항목별 공제가 될 수 없으며 Schedule C에 기록되어서도 안됩니다.

자영업 수입 말고도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총 수입이 \$102,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귀하가 임금으로 \$30,000 달러를 받았고 자영업 소득으로 \$40,000 달러를 벌었다면, 귀하는 임금과 사업 수입의 둘 다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에 귀하의 임금이 \$74,500 달러에 달하고, 사업을 통해서는 순 수입이 \$28,300 달러 라면, \$102,000 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중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수입 \$74,500 에 대하여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보험료로 7.65 퍼센트를 공제 할 것입니다. 귀하는 자영업 수입액에서 \$27,500 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보험료로 15.3 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800 의 수입액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보험료로 2.9 퍼센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중사 크레딧 (사회보장 혜택의 필요한 점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일에 해야 하는 기간은 생년월일을 근거로 하지만, 누구에게도 10년(40 크레딧)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에 순 수입이 \$4,200 달러 이상이라면, 연간 최대치인 크레딧 4가 주어집니다. 크레딧 1점은 한 해 동안 \$1,050 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순 수입이 \$4,200 미만이라 해도, 이 안내 지에서 조금 뒤에 설명될 선택적 방법을 이용하여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의해 적용을 받는 모든 수입은 사회보장 혜택을 산정할 때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최대치까지 모든 수입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산정

사회보장에서의 순 수입은 상거래 또는 사업의 총 수입에서 허용되는 사업 공제 및 감가상각 액을 뺀 수치입니다.

어떤 소득은 사회보장에 대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 수입을 산정할 때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 달러로서 주식 및 증권으로 받지 않는 한, 주식의 배당금과 연기금의 이자,
- 사업이 대금업이 아닌 한, 대부금의 이자,
- 부동산 달러가 아니거나 대부분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부동산 임대수입, 또는
- 한정적 파트너쉽으로 부터 받는 소득 등.

(뒷장)

선택적 방법

실제 순 수입이 \$400 미만이라 해도, 수입은 선택적 신고 방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계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 수입이 \$600 이상이거나 이익이 \$1,600 미만일 경우에는 선택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다섯번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중 적어도 2년 동안 실제 순 수입이 \$400 이상이었어야 하고 순 수입은 총 소득의 3분의 2 미만 이어야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 자영업 총 소득이 \$600에서 \$2,400 사이라면, 총 소득 또는 실제 순 수입의 3분 2를 신고하여도 되고, 또는
- 총 소득이 \$2,400 (또는 이상) 이고 실제 순 수입이 \$1,600 (또는 이하) 라면, \$1,600 이하의 실제 순 수입 중 하나를 신고 하여도 됩니다.

농민에게 적용되는 특별 사항: 농민이라면, 매년 선택적 신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해의 실제 순 수입이 적어도 \$400 야만 한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에게 전화하셔서 *A Guide For Farmers, Growers And Crew Leaders* (농민, 재배자, 인부고용자를 위한 안내) 책자 (출판 번호 05-10025)를 요청 하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입 신고 방법

순 수입이 \$400 이상인 해마다 그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다음과 같은 연방 세무 서식들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미국 개인별 소득세 신고서)
- 해당 여부에 따라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사업 이익 또는 손실) 또는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농업 이익 또는 손실)
- Schedule SE (*Self-Employment Tax*—자영업 세)

이 서식들은 IRS와 대부분의 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서 및 스케줄들을 자영업 세금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 (IRS) 으로 보내십시오.

비록 어떠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자영업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Form 1040 및 Schedule SE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이것은 해당됩니다.

가족 사업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파트너일 수 있고 또는 합작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비록 공동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해도 별도의 자영업 신고서 (Schedule SE)에 사업체 이익분에서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 수입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들 각자는 신고해야 할 순 수입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50 대 50).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려면

사회 보장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안내책자에 대해 알아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장거리전화 1-800-772-1213번 (청각장애인은 TTY 번호, 1-800-325-0778)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드립니다. 통역 서비스는 전화로나 지역사무실 방문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화 응답 서비스를 통해 하루 24시간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 보장국에서는 일부 전화를 선정하여 통화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Publication No. 05-10022-KOR
If You Are Self-Employed (Korean)
January 2008